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 교육감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2년 6월 29일

○ 회부일자 : 1992년 7월 1일

3. 제 안 이 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의 개정(1991. 12. 31, 법률 제4347조)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사국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4. 주 요 골 자

가. 의사국의 조직 (안 제3조)

- 의사국장 (지방서기관)

- 의사국의 하부 조직

· 의사과 (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의안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 의안연구관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나. 사무직원의 정수 (안 제4조) : 지방공무원 14명

다. 직원의 파견요청 근거 명기 (안 제5조)

라. 조례시행에 따른 규정제정 근거 명기 (안 제6조)

5. 검 토 의 건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바,

- 제1조 ~ 제3조 제1항은 지방자치법과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같은 맥락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 제3조 제3항, 제4항과 제4조 條文中 “그내역은 별표와 같다” 을
조례에 명시하였음은 향후 일일이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해야하는 어려움과 비능률성을 감수하더라도 지방자치
법 제 103조에 비해 맥락을 달리하는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3항, 제35조, 제42조와 교육부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제5조는 충청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9조와 지방
공무원법 제30조 제4항에 직원 파견요청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굳이 조례로 명시하지 않아도 될것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사료됨.
- 제6조는 조례에 따른 위임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통례이고
규정은 기관 자체의 운영에 관한사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됨.

6. 수 정 안 : 별 첨